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 8 4

발의년월일 : 1998. 6. 10
발 의 자 : 이상근의원 외 5인

1. 제안이유

○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와 관련 1, 2대 고성군의회 의원 총수는 15명이었으나 제3대 고성군의회 의원 총수는 14명으로 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의 조정이 불가피 요구됨.

2. 주요골자

○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의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함에 있음.

구 분	당 초	변 경
총 무 위 원 회	7명	7명
산업건설위원회	7명	6명
의회운영위원회	6명	6명

3. 참고사항

○ 근거 : 경상남도시·군의회의원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
('95.5.30 조례 제2357호)
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개정('98.4.30)

고성군의회 조례 제 호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총무위원회 7명
2. 산업건설위원회 6명
3. 의회운영위원회 6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(생 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____ _____ _____ _____
1. 총무위원회 7명	
2. 산업건설위원회 7명	2. 산업건설위원회 6명
3. 의회운영위원회 6명	_____